



보도	2023.7.31.(월) 조간	배포	2023.7.28.(금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금융투자검사국 검사2·3·5팀	책임자	국 장	김진석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김보성	(02-3145-7110)
			팀 장	김기복	(02-3145-7040)
			팀 장	이상민	(02-3145-7035)

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을 개선시켜 투자자 보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
I | 검사 경과

- '23.4.24.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였고, 동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
 -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.
- 검사 결과, CFD 광고, 계좌개설 및 판매,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.
 -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
 -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① 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불확실한 사항 오인 소지 (예: A사만의..) ▪ 사실과 다르게 표현 (예: 최대 XX배)
② 계좌 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실지 명의 미확인
③ 판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요약설명서 미제시 ▪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 안내 미흡 등
④ 리스크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CFD 거래가능 종목 유동성 기준(거래량 등) 관리 미흡

II 불합리한 CFD 영업 행태

※ 동 내용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잠정적인 것으로써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사례① 광고 :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

- 투자성 상품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, 금융소비자의 권리·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.
- 주식 대응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, 'A사만의 장점'이라고 표현하고,
- 핵심설명서에는 '최대 2.5배 레버리지'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 상으로 레버리지가 2.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.

▶ (예시) [증거금 100(현금 40, 대응 주식 60), 편입자산 250인 경우]

☞ 실제 레버리지는 2.5배($250 \div 100 = 2.5$)임에도, 현금 증거금만 감안하여 6.3배 ($250 \div 40 = 6.3$)로 광고

사례② 계좌 개설 : 실지 명의 미확인

-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,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*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,
- *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, ④기존계좌 활용,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
-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.

사례③ 판 매 :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

【 요약설명서 미제시 】

-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,
 -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【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 안내 미흡 】

- CFD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부정적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(최대손실액 등)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,
 -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습니다.

▣ (예시) 국내 CFD 위험 시나리오 분석

위기 상황	코로나('20.2.20. ~ 3.19.)		
	A주식	B주식	C주식
주가 최대 하락률	-5.8%	-24.9%	-9.1%

기간에 대한 누적 손실률이 아닌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

☞ 금융시장 위기 기간에는 대부분 주가가 하락하므로 특정일의 손실률보다 누적 손실률이 더 클 수 있음

【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(목표시장) 설정 미흡 】

-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의 특성, 위험도를 고려하여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,
 -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'지식과 경험' 수준을 단순히 '높음'으로만 설정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도 고객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.

사례④ 리스크 관리 :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 미흡

- CFD 거래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(거래량 등)에 따라 관리하는 등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,
 -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CFD 거래가능 종목을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

참고 CFD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

- (A사)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A사는 CFD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,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(누적 금액 140억원 상당)하고 있었으며,
 - A사 CFD 임원의 요청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A사가 아닌 시스템 개발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→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실을 검찰에 두 차례(5월·6월) 걸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.

< 수수료 등 배분 세부 구조 >



* '23.5월 기준(잠정)

- (B사) '23.4.24. 일부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하여 B사의 임직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등을 주식매매에 이용하였거나,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적정하였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,
 - B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또한, B사의 일부 부서에서 회의·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.

➔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.

※ 「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(잠정)」(23.5.25.) 보도참고자료 참고

III

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.
 - 또한,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한편,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·발표한 「CFD 규제 보완방안」(5.30일)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9.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 - * 「9.1일부터 CFD(차액결제거래)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」(7.19일 금융위·금감원 보도참고자료) 참조
 - 이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·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